



TECHNICAL INFORMATION

36 Myeongji ocean city 9-ro,
Gangseo-gu, Busan, 46762
Republic of Korea

Phone :+82-70-8799-8323
Fax :+82-70-8799-8319
E-mail : kimja@krs.co.kr
Person in charge : KIM JaeA

No : 2024-IMO-10
Date : 9th September 2024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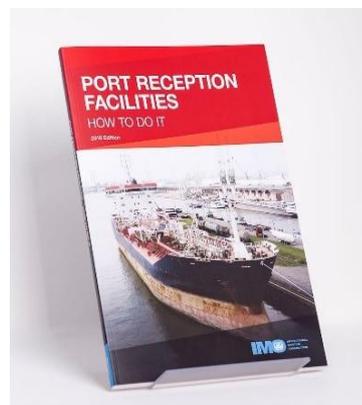
MARPOL 부속서 1장 및 5장 홍해, 아덴만 해역의 특별해역 지정 안내

이 기술정보는 2025년 1월 1일부터 발효되는 MARPOL 부속서 1장과 5장(이하 Annex I & V)의 새로운 특별해역인 홍해와 아덴만 해역에 대한 정보를 제공하기 위해 작성되었습니다. 지난 MEPC 80차(2023년 7월)에서 홍해 및 아덴만 해역의 MARPOL Annex I 특별해역과 홍해 해역의 MARPOL Annex V 특별해역에 대한 발효일이 2025년 1월 1일로 결정되었습니다.

이와 관련하여, 홍해 및 아덴만 해역의 특별해역 지정 배경, MARPOL Annex I & V 특별해역 현황, 그리고 선주 고려사항 및 검사원 참고사항을 제공하고자 기술 정보를 발행하니 업무에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1. 배경

해양환경보호위원회(MEPC)는 홍해 및 아덴만 해역의 해양학적, 생태학적 조건 및 주요 해상 운송 경로에 대한 기술적 필요성 등으로 인해 MARPOL Annex I 및 V의 특별해역으로 지정 하였으며, 해당 특별해역의 발효를 위한 홍해 및 아덴만 해역에 접한 지부티, 이집트, 요르단, 이스라엘, 사우디아라비아, 소말리아, 수단 등의 국가들이 해당 항구 및 터미널에 MARPOL Annex I 및 V 관련된 선박기인 폐기물과 잔류물에 대한 적절한 육상 수용시설을 갖추고 있음을 확인하였음. 그 결과, 홍해 및 아덴만 해역의 MARPOL Annex I & V 특별해역 발효일을 2025년 1월 1일로 지정하였음.



(사진 출처: Encyclopedia Britannica, IMO)

2. MARPOL Annex I & V 특별해역 현황(MEPC.1/Circ.778/Rev.4 참조)

1) MARPOL Annex I & V 에서는 아래 [표1]과 같이 특별해역이 지정되어 있으며, 2025년 1월 1일부터는 MARPOL Annex I의 특별해역에 **홍해와 아덴만 해역**이, 그리고 MARPOL Annex V의 특별해역에 **홍해 해역**이 추가됨.

표1. MARPOL Annex I & V 특별해역 현황

MARPOL Annex I (기름)	MARPOL Annex V (폐기물)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발틱해 해역(Baltic Sea) • 흑해해역(Black Sea) • 걸프해역(Gulfs area) • 지중해 해역(Mediterranean Sea) • 북서유럽수역(North West European waters) • 남서아프리카해역(Southern South African waters) • 남극해역(Antarctic area) • 홍해해역(Red Sea) • 아덴만해역(Gulf of Aden) • 아라비아해의 오만해역(Oman area of the Arabian Sea)¹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발틱해 해역(Baltic Sea) • 걸프해역(Gulfs area) • 북해해역(North Sea) • 지중해 해역(Mediterranean Sea) • 광역 캐리비안 해역(Wider Caribbean region) • 남극해역(Antarctic area) • 홍해해역(Red Sea) • 흑해해역(Black Sea)¹

2) 홍해 해역 및 아덴만 해역은 정보는 MARPOL Annex I & V에 정의된 바와 같이 하기와 같음

- 홍해 해역: 수에즈만 및 아카바만을 포함하여 라스시아네(북위 12도28.5분, 동경 43도19.6분)와 하스무라드(북위 12도40.4분, 동경 43도30.2분)를 연결한 항정선을 남단으로 하는 해역
- 아덴만 해역: 라스시아네(북위 12도28.5분, 동경 43도19.6분)와 하스무라드(북위 12도40.4분, 동경 43도30.2분)를 연결하는 항정선 서쪽과 라스아시르(북위 11도50분, 동경 51분16.9분)와 라스파르타크(북위 15도35분, 동경 52도13.8분)를 연결하는 항정선의 동쪽에 위치하는 홍해와 아라비아해 사이의 아덴만 일부 해역



그림1. 홍해 해역



그림2. 아덴만 해역

¹ 해당 해역들은 MARPOL 협약에서 특별해역으로 지정되어 있으나, 적합한 항만수용시설의 확충에 관한 통보를 IMO에 보고하지 않음에 따라 특별해역으로서 효력을 발생시키지 못하고 있는 상태임. 따라서, MARPOL Annex I Reg.38.8.2 & MAPROL Annex V Reg.8.2.2에 따라 특별해역 효력 발생 전까지는 특별해역 외에서의 배출에 관한 요건을 준수함.

3. 선주 고려사항

(1) MARPOL Annex I

- 본선 선원들에게 2025년 1월 1일부터 홍해해역 및 아덴만 해역이 MARPOL Annex I 특별해역으로 추가됨을 교육하시기를 권고 드립니다.
- 홍해해역 및 아덴만 해역의 특별해역 추가와 관련하여 해당해역 항해 시 기름기록부 작성을 철저히 하시기 바랍니다.
- 홍해해역 및 아덴만 해역내의 육상 수용시설에 대한 정확한 정보는 해당지역의 대리점 등을 통해 확인 바라며, 육상 수용시설로의 배출 시 관련 영수증을 기름 기록부에 첨부하여 보관하시기 바랍니다.
- MARPOL Annex I 상에 지정된 특별해역 내의 유성혼합물 및 기름 배출요건을 철저히 준수하시기 바랍니다.
- 특히, 400톤 이상 10,000톤 미만의 선박이 특별해역 내에서 유성 혼합물을 배출하고자 할 경우, 기름필터링장치에 15ppm 경보 및 자동정지장치가 필요함을 주지하시기 바랍니다.
- 특별해역 내에서 유조선의 화물 구역으로부터의 기름 또는 유성혼합물의 배출이 금지되는 점을 주지하시기 바랍니다.

(2) MARPOL Annex V

- 본선 선원들에게 2025년 1월 1일부터 홍해해역이 MARPOL Annex V 특별해역으로 추가됨을 교육하시기를 권고 드립니다.
- 홍해해역의 특별해역 추가와 관련하여 해당해역 항해 시에는 폐기물 기록부 작성을 철저히 하시기 바랍니다.
- 홍해해역내의 육상 수용시설에 대한 정확한 정보는 해당지역의 대리점 등과 연락하시기 바라며, 육상 수용시설로의 배출 후 관련 영수증을 폐기물 기록부에 첨부하여 보관하시기 바랍니다.
- MARPOL Annex V상에 지정된 특별해역 내의 폐기물 배출요건을 철저히 준수하시기 바랍니다.
- 특별해역 내에서는 음식물 쓰레기가 25mm 이하로 분쇄되고 육지로부터 12해리 이상 떨어진 경우에만 배출할 수 있으며, 화물 잔류물은 MARPOL Annex V Reg.6.1.2에 명시된 조건을 모두 만족하는 경우에만 배출이 가능하다는 점을 주지하시기 바랍니다.

4. 검사원 참고사항

- 선박 검사 및 심사 시, 특별해역 추가에 따른 기름 기록부 및 폐기물 기록부의 적절한 기록 유지 여부를 확인해 주시기 바랍니다. (특별해역 내에서의 배출 또는 육상 수용시설로의 양륙 관련 기사 및 영수증)

첨부

1. Res.MEPC.381(80): Establishment of the date on which Regulations 15.3, 15.5 and 34.3 to 34.5 of MARPOL Annex I, in respect of the Red Sea and the Gulf of Aden Special Areas, shall take effect
2. Res.MEPC.382(80): Establishment of the date on which Regulations 6 of MARPOL Annex V, in respect of the Red Sea Special Area, shall take effect
3. MEPC.1/Circ.778/Rev.4: List of Special Areas, Emission Control Areas and Particularly Sensitive Sea Areas

배부처 : 선주, 검사원 등 관련 업계 종사자

(Distributions : Ship owners, KR surveyors, Other relevant parties)

Disclaimer :

Although all possible efforts have been made to ensure correctness and completeness of the contents contained in this information service, the Korean Register is not responsible for any errors or omissions made herein, nor held liable for any actions taken by any party as a result of information retrieved from this information service.